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근로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사실에 근거하여, 귀하는 뉴욕주에서 코로나19 노출로 인한 근로자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근무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자 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업무 관련 질병 또는 상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민 상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뉴욕주 근로자 보상 위원회(New York State Workers' Compensation Board, 이하 위원회)는 청구를 신속해 해결하고 수당이 즉시 지급되도록 보장함으로써 발병 및 만성 상해에 대응해 왔습니다. 결핵 및 석면증 같은 질병부터 9/11의 비극, 오피오이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위원회는 항상 주 전역의 부상 근로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분투해왔습니다. 코로나19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구를 제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 귀하의 청구는 고용주의 근로자 보상 보험사가 검토합니다. 보험사가 청구를 수락하면 코로나19 청구 금액이 지급됩니다(**보상 가능**이라고 함). 보험사가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는 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판관은 귀하의 증언 및 의료 제공자의 증언을 청취하여 귀하가 근무하는 장소, 코로나19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노출 범위, 근무 환경에서 코로나19가 만연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근로자 배상법(Worker's Compensation Law)은 다음의 내용을 보장합니다.

- 부상 근로자의 업무 관련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급.
- 질환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임금 지급 혜택.
- 사망 시 직원의 생존 부양 가족에게 혜택 지급.
- 뉴욕, 나소, 서퍽, 록랜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는 최대 12,500 달러, 뉴욕의 기타 카운티에서는 최대 10,500 달러의 장례식 비용 환급.

어떤 작업 환경에서 코로나19 발병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답변: 노출 위험이 상당히 높은 환경에서 일하는 개인은 코로나19 청구에 대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직원은 코로나19 노출을 기록하는 곳에서 대중과 근접 거리에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종사자, 최초 대응자, 운송 노동자, 교정 공무원 및 식량 서비스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소매점 근로자 등 근무 중 대중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는 업무 관련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청구와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답변: 대부분의 근로자는 코로나19 노출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할 수 없지만, 근로자는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업무의 성격과 범위를 입증함으로써 직장에 상당히 높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근무 빈도 및 업무 유형, 특히 대중과의 접촉을 포함하는 직무 유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근로자 보상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발행한, 귀하의 업무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양성 검사 결과가 가장 좋지만, 공인 받은 근로자 보상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발행한 진단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PCR 검사를 통한 진단 결과 혹은 검사 의료진의 검진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답변:

1.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고용주에게 질병 여부를 통보하십시오. 고용주에게 이메일 또는 수기, 타이핑 서신을 통해 서면 통보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문자 메시지의 사용은 피하십시오.
2. **직원 청구(서식 C-3)(wcb.ny.gov에서 확인 가능)**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청구 제출 주소는 양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능한 경우 근로자 보상 대상 환자에 대한 치료 권한을 가진 의사에게 검진을 받으십시오. 화상 통화 또는 음성 통화로 가능합니다. **wcb.ny.gov**에서 위원회 승인을 받은 의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귀하를 치료하는 근로자 보상 의사에게 근무 중 코로나19와 접촉했다고 통보하십시오. 의사가 동의할 경우, 의사는 보험사와 이사회에 진단서를 보냅니다.
5. 의사가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의사는 이 결과지를 동봉하여 제출합니다. 귀하가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의사에게 전달하거나 사본을 귀하의 청구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절차에 얼마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답변: 고용주에게 근로 중 감염되었다고 전달하면, 고용주는 즉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18일 내에 청구에 대한 절차를 시작하고, 승인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이러한 청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을 즉시 지급하여 청구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가족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쟁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문제가 있거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뉴욕주 근로자 보상 위원회에 **(800) 580-6665**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또는 청구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연락 해주세요. 우리가 귀하를 도울 것입니다. **AdvInjWkr@wcb.ny.gov**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회장은 **모든 보험사에 서신**을 보내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고 가능한 한 빨리 청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유의사항: 본 문서의 목적은 대중에게 바이러스 노출 및 수축 청구에 대한 일반적인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 보상법에 따른 개별적인 잠재적 혜택 청구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나 법적 권한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으려면 근로자 보상 전문 변호사 또는 허가받은 청문회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